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47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문금주·주철현·송옥주
임호선·정일영·이광희
박용갑·이정문·문대림
장종태·송재봉·김 윤
조인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변경되지 않아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따른 부수적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농업인등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 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 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 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u>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u> <u>상인 자</u>	1. <u>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농</u> <u>업인등이 「전기사업법」 제7조</u> <u>에 따라 자기 소유의 농지에</u> <u>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u> <u>여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u> <u>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u> <u>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u> <u>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고려</u> <u>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u> <u>년마다 정하여 고시하는</u>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